#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22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박홍배·윤준병·김태년

이용선 • 박정현 • 김태선

이광희 • 박 정 • 이용우

서미화 • 박용갑 • 정진욱

이재정 • 이정헌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 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국외사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 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 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	②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			
	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			
	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보다 많은 국외사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			
	의 위탁을 한 자. 다만, 국내			
	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 ⑰ (생 략)	③ ~ ⑰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제2조의2(국외에서의 행위에 대			
	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